

의 결



국민권익위원회

A C R C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0 - 359호

의 안 명 「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6) -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규정 개선」

대상기관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소방청

의 결 일 2020. 8. 3.

주 문

「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6) -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규정 개선」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소방청장에게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0년 8월 3일

위 원 이 건 리

위 원 권 태 성

위 원 김 기 표

위 원 김 태 응

위 원 김 의 환

위 원 강 재 영

위 원 황 성 주

위 원 홍 인 옥

위 원 윤 영 훈

위 원 김 수 정

위 원 정 정 미

위 원 오 완 호

위 원 이 근 동

위 원 박 홍 규



[별 지]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
보다 나은 **국민권익위원회**

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6)

-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규정 개선 -

2020. 8.



국민권익위원회

A O B C

❏ 목 차 ❏

I. 추진배경	1
II. 문제점 및 개선방안	2
1. 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·피난구조 설비 세부 기준 마련	2
2. 옥내소화전 사용표지판 부착 위치 및 표기 방법 개선	4
3.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대응 정보 제공 확대	7
4. 사용신고필증을 통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	10
III.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	13



I. 추진배경

<정부 강조사항>

- ▶ 모든 정책은 **수요자인 국민의 관점**에서 추진되어야 하며, 진심을 다해 **국민과 소통**해야 할 것임 ('18.1.30. 장·차관 워크숍)
- ▶ **의견을 내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** 끝까지 노력할 것 ('19.11.19. 국민과의 대화)
- ▶ 어려움이 클수록 **답은 현장에** 있고,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**현장과의 소통을 강화**하는 것이 중요함 ('20.2.4. 국무회의)

□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**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 사항**을 적극 청취하여 **정책·제도에 반영**하는 것이 중요

-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**생활 속 작은 불편**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

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**과제발굴**을 위해서는 다양한 ‘국민소통창구’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

※ 발굴원 : 국민콜110, 국민신문고, 국민생각함, 국민제안, 청와대 국민청원 등

-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을 초래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

□ 다양한 ‘국민소통창구’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,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

※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, 관계법령·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

- 장애인 정보·피난설비, 옥내소화전 사용표지판, 재난문자 발송,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개선 과제 선정



Ⅱ. 문제점 및 개선방안

1 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·피난구조 설비 세부 기준 마련

[소방청]

□ 현 황

- 「장애인편의법」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에 따르면, 장애인 등의 일상 생활 중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·설비 이용을 위해 공원, 공공건물·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
 - 특히,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공원, 공공건물·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의무
 - ※ 경보 설비(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) : 단독경보형 감지기, 비상경보설비(비상벨설비, 자동식사이렌설비), 시각경보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방송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, 통합감시설비, 가스누설경보기
 - ※ 피난구조설비(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) : 피난기구(피난사다리, 구조대, 완강기 등), 인명구조기구(공기호흡기 등), 유도등(피난유도등, 통로유도등, 유도표지 등), 비상조명등
-
- 한편, 「소방시설법」에는 「장애인편의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·유지 및 관리 의무
 - ※ 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

□ 문제점

- 「소방시설법」에 따른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,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·피난구조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시행령 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등의 효과적인 대처 곤란

※ 설치 기준 예시: 설비의 부착위치·방법, 종류, 품질, 수량 등

〈관련 민원〉

- 음성출력이 되는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('20.4월 국민신문고)
- 장애인 피난시설 등과 관련하여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 후단 부분의 대통령령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듯하니 이에 대하여 기준 마련을 요청 ('20.2월 국민신문고)
-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이에 대해 규정을 마련 바람('19.1월 국민신문고)
- 장애인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 해당 설비 설치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('18.12월 국민신문고)

□ 개선방안

-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·피난구조 설비의 설치·유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

⇒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반영



2 옥내소화전 사용표지판 부착 위치 및 표기 방법 개선

[소방청]

□ 현 황

- 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치를 의무화

※ 연면적 3,000㎡ 이상 시설, 층수가 4층 이상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, 근린생활·판매·의료·업무·숙박·창고 등의 시설로 연면적 1,500㎡ 이상 시설, 일정기준의 터널 등

-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는 '소화전'이라는 표시와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규정(「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(소방청고시) 제7조제4항)

□ 문제점

- 설비함 바깥 표면에만 표지판이 부착되어 함을 열고난 후 소화전 사용요령 확인이 어려워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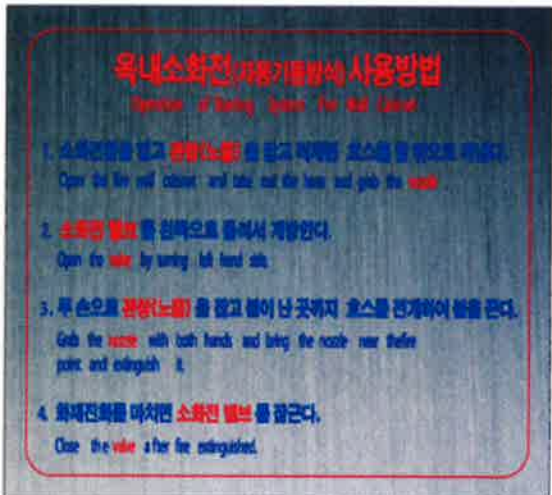
소화전 개함 전(前)	소화전 개함 후(後)	사용 표지판
		



〈관련 민원〉

-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옥내소화전 설비함 외부표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화재 시 옥내소화전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 안내표지판이 가려져 사용자가 소화전 사용방법을 볼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('20.1월 국민신문고)
-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소화함 바깥에만 있어 실제 사용 시 불편하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('19.10월 국민신문고)
- 현재 다중이용시설, 공동주택(아파트) 등의 소화전(옥내소화전)을 살펴보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소화전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소화전의 문을 열게 되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보면서 순서대로 따라하기가 어렵고, 불편이 많은 상황임('18.11월 국민신문고)
- 현재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이 소화전 개폐문 앞쪽에만 부착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 비상 상황시 소화전 문을 열었을때 사용방법을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('18.4월 국민신문고)

- 한편, 소화전 사용방법을 글씨로만 표기한 경우 그림과 글씨가 병행 표기된 표지판에 비해 **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져 화재발생 시 빠른 대처 어려움**

글씨 표지판	글씨·그림 표지판
 옥내소화전(자동기동형) 사용방법 Operation of Starting System Fire Wall Cabinet 1. 소화전함을 열고 관형(노즐)을 잡고 직접관 호스를 잘 당겨주세요. Open the fire wall cabinet and take out the hose and grab the nozzle. 2.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다. Open the valve by turning left hand side. 3. 두 손으로 관형(노즐)을 잡고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하여 불을 끈다. Grab the nozzle with both hands and bring the nozzle near the fire point and extinguish it. 4. 화재진화를 마친 후 소화전 밸브를 잠근다. Close the valve after fire extinguished.	 소화전 사용방법 Operation of Starting System Fire Wall Cabinet 1. 소화전함을 열고 관형(노즐)을 잡고 직접관 호스를 잘 당겨주세요. Open the fire wall cabinet and take out the hose and grab the nozzle. 2. 소화전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다. Open the valve by turning left hand side. 3. 두 손으로 관형(노즐)을 잡고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하여 불을 끈다. Grab the nozzle with both hands and bring the nozzle near the fire point and extinguish it. 4. 화재진화를 마친 후 소화전밸브를 잠근다. Close the nozzle after fire extinguished.



□ 개선방안

- 옥내소화전 함이 닫혀있거나 개방된 경우 모두 사용요령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기준 개선
- 옥내소화전 표지판에 사용방법을 글씨와 그림을 병행하여 표기

⇒ 「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개선

현 행	개선안(예시)
제7조(함 및 방수구 등)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“소화전”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(외국어 병기)을 붙여야 한다.	제7조(함 및 방수구 등)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<u>외부표면</u> 에 “소화전”이라 <u>표시하고 그 내·외부표면에</u>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(외국어· <u>그림</u> 병기)을 붙여야 한다.



[행정안전부]

□ 현 황

- 각 기관*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정보를 입력하여 긴급재난문자를 송신

* 기관별 소관사항 : 행정안전부(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), 산업통상자원부(가스누출), 보건복지부(감염병), 환경부(미세먼지), 소방청(대형화재), 지자체(관할 구역 내 자연재난) 등

- 재난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문안을 활용하여 각 기관에서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하여 입력

<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(예시) >

명칭	표준문안	
태풍경보	4G폰	[행정안전부] 오늘 ○○시 ○○지역 태풍 경보.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, 하천,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,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.
폭염경보	4G폰	[행정안전부] 오늘 ○○시 ○○지역 폭염경보. 물 충분히 마시기, 무더위 쉼터 이용, 실외 작업장 폭염 안전수칙(물, 그늘, 휴식) 지키기 등 안전에 유의바랍니다.

*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2(행정안전부)

□ 문제점

- 문자 내용에 재난의 종류와 일부 주의사항만 개략적으로 포함되어 재난 대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미흡

< 긴급재난문자 발송 사례 >

[경기도청] 9.7(토) 태풍 접근으로 강풍에 의한 창문파손 주의, 낙하물 주의, 외출자제, 야외활동 중단, 해안가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.

[행정안전부] 오늘 07시 서울, 인천, 경기일부, 인천·경기북부 앞바다 태풍 경보. 해안지대 접근금지, 농수산물 보호 행위자제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바랍니다.

[행안부] 오늘 11시 광주.대전.세종, 경기.충남.전남 일부, 영월 폭염경보, 야외활동 자제, 충분한 물마시기 등 건강에 유의바랍니다

[세종특별자치시청] 21일 04시 세종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
어린이, 노약자는 야외활동 자제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재난 예방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**안전점검 방법,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행동요령, 비상연락망**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, **문자 용량 제한**으로 종합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

- 재난문자 전송 시 재난에 **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**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존재

- 행정안전부에서 폭염,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문자를 국민에게 전송하고 있으나 안전시설 위치나 재난대응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, 문자 전송 시 관련 정보 제공 필요(’19.8월 국민신문고)
-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면서 국민들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으나,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법이 미흡하므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(’19.8월 국민신문고)

□ 개선방안

○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**제공 정보 확대 방안 마련**

⇒ **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**

[참고 : 재난대비 정보 제공 사이트(예시)]

구분	비고
국민재난안전포털 (행안부)	· 재난대비행동요령, 비상연락망, 재난 시 대피장소, 안전점검방법 등 
어린이 안전배움터 (행안부)	·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, 소화기 사용법, 심폐소생술 등

구분	비고
	
· 각 지자체별로 재난을 대비한 사이트 운영 중 - 의정부시는 홈페이지에 지진 옥외대피장소, 무더위쉼터 정보를 운영중이며, 제주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이트에 기상특보별 주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 중	
지자체별 운영정보 (각 지자체)	



[국토교통부]

○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고, **검사 받은 사실을 자동차 등록원부·등록증에 기록·관리하도록** 규정(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)

<자동차 등록증 中 일부>

(앞쪽)

자 동 차 등 록 증				
제 호	최초등록일 : 년 월 일			
① 자동차등록번호	② 차 종		③ 용 도	

1. 제 원			
⑫ 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		
⑬ 길이	mm	⑭ 너비	mm
⑮ 높이	mm	⑯ 총중량	kg

[illegible]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m² 또는 백상지 80g/m²]



- 한편,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소유자는 **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사용신고**, 신고를 접수한 경우 **사용신고필증 교부**

※ 이륜자동차 운행 시 사용신고필증 항시 휴대 의무

- 또한, 이륜자동차의 **배출가스·소음정도의 허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**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7조)

※ 사용 신고 이후 **3년**이 되는 해에 최초 검사 실시 후 **2년** 마다 정기 검사

□ 문제점

- 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된 자동차 등록증과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 **사용신고필증에 검사 유효기간 기재란이 없어** 소유자가 정기검사 결과표를 분실할 경우 **검사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알기 어려움**

※ 이륜자동차 매매시에도 검사유효기간 확인 곤란

- 검사 일시·기간 등에 대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 하도록 한 규정 또한 없음

- 이로 인해, **기한 내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** 받는 사례 빈번

〈관련 민원〉

-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륜 자동차 운전자들은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부족.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하여 기록할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, "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" 경우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작성하는 곳이 없어 등록증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알 수 없음.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및 지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('20.2월 국민신문고)
-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은 자동차 등록원부와 다르게 정기검사 유효만료일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, 특히, 중고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구두로 듣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정보를 듣거나 잊는 경우가 생겨 과태료 부과('19.7월 국민신문고)

- 일반자동차 등록증과 달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재란이 없어 자신의 이륜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인지, 검사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미수검에 대한 불이익(과태료) 발생('19.2월 국민신문고)
- 환경검사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신고필증의 정기검사일을 확인하여 실시했어야했다고 말하는데 해당 필증에는 정기검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개선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시기 바람 ('17.6월 국민신문고)

□ 개선방안

-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양식 마련
- ⇒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4호 서식 개정



Ⅲ.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

□ 대상기관 : 소방청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

□ 세부과제별 조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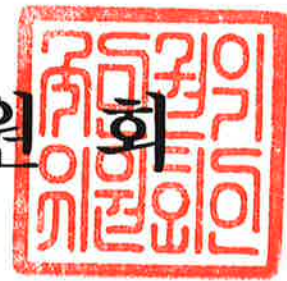
과제명	조치사항	소관기관	조치기한
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·피난구조 설비 세부 기준 마련	○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·피난구조 설비의 설치·유지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⇒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반영	소방청	'21.2월
옥내소화전 사용표지판 부착위치 및 표기 방법 개선	○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기재 표지판을 설비함 내·외부 표면 모두 부착 ⇒ 「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개선	소방청	'21.2월
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대응 정보 제공 확대	○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제공 정보 확대 방안 마련 ⇒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 개정	행정안전부	'21.2월
사용신고필증을 통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	○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 양식 마련 ⇒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4호 개정	국토교통부	'21.2월



정 본 입 니 다 .

2020. 8. 4.

국 민 권 의 위 원 회



A C R C